



555 Capitol Mall, Suite 300  
Sacramento, California 95814  
Call toll free: 1-866-356-5217  
Fax: 916-319-9295  
Email: votersfirstact@auditor.ca.gov

##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와 관련된 10가지 질문

### 1.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란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 주는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전국 인구통계 조사의 인구통계 정보가 갱신된 후, 인구 데이터의 변화가 캘리포니아의 선거구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원, 하원, 조세형평국의 선거구를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0년 인구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 상원, 하원, 조세형평국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책임을 맡게 될 새로운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구 구성을 통해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초당적인 규정에 따라 새로운 선거구를 지정해야 합니다.

### 2. 위원회의 창설은 누구에 의해 승인되었습니까?

2008년 11월 총선 투표에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에 의해 통과된 유권자 우선 법안(또는 "법안")인 주민 발의안 11호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의 창설이 승인되었습니다.

### 3. 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본 법안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절차는 주 감사관에 의해 시행됩니다. 캘리포니아에 등록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유권자는 위원회 후보 등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5년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상태로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유권자
- 지난 3번의 주 전체 총선에서 최소 2번 이상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

그러나 법안이 이해상충의 대상으로 정의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원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 10년 동안 지원자 혹은 지원자의 직계가족이 다음과 같은 규정에 정의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이해상충으로 정의됩니다.

- 캘리포니아 주의회 또는 주정부 공직에 임명 또는 선발되었거나 후보자였던 사람
- 캘리포니아 정당이나 캘리포니아 주의회, 선거로 선발되는 주정부 공직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였던 사람
- 캘리포니아 정당의 중앙 위원회에 선발되었거나 임명되었던 사람
- 등록된 연방 로비스트
- 캘리포니아 주 또는 캘리포니아 지방 정부에 등록된 로비스트
- 캘리포니아 주의회, 입법부, 조세형평국의 유급직원
- 시기를 막론하고 캘리포니아 주의회, 주정부, 선거로 선발되는 공직의 지역 후보자에게 한 해 \$2,000 이상 기부한 적이 있는 사람

주지사, 입법부 의원,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 조세형평국 의원의 직원 또는 컨설턴트로 일하였거나 이들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거나 직계가족인 경우에도 이해상충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 4. 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면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요?

2009년 1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60일의 지원기간 동안 주 감사국(또는 "감사국")에 지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지원자는 감사국의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는 작성 중에도 저장이 가능하므로 컴퓨터 상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면 지원자는 지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지원서 사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에는 감사국이 지원서를 받은 날짜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일단 감사국에 제출된 지원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지원서를 통해 법안에 명시된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지원자는 지원자 본인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보증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1990년에 발효된 미국 장애인 권리 법안에 의거, 적정 수준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서류 형태의 지원서를 필요로 하는 지원자의 경우, 누구나 감사국에 서류 형태의 지원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위원회는 총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나요?

위원회는 민주당 5명, 공화당 5명, 무소속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

(계속)

## 6.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 위원은 어떤 식으로 선발됩니까?

최초 지원서와 보충 지원서는 3명의 독립 감사관으로 구성된 지원자 조사 위원단(또는 "위원단")에게 전달됩니다. 위원단은 우선적으로 모든 지원서를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지원자" 120명을 선발하여 새크라멘토에서 지원자 면접을 실시할 것입니다. 120명의 지원자는 지지정당에 따라 3개의 부류로 분류되며 첫번째 부류는 민주당 40명, 두번째 부류는 공화당 40명, 세번째 부류는 무소속 40명으로 구성됩니다. 감사국은 면접에 참여하기 위해 지원자가 지출한 경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할 것입니다.

위원단은 면접에 참여한 120명의 지원자 중, 가장 적합한 지원자 60명을 선발하고 이를 지지정당에 따라 3부류로 분류할 것입니다. 첫번째 부류는 민주당 20명, 두번째 부류는 공화당 20명, 세번째 부류는 무소속 20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단은 2010년 10월 1일 전까지 상원의장대행, 상원 야당 원내 대표자, 하원의장, 하원 야당 원내 대표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3개 부류에 속하는 지원자 명단을 국무장관과 하원 수석 서기장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해당 입법부 대표자들은 모두 각각의 부류 명단으로부터 최대 2명의 지원자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외되지 않은 지원자 명단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주 감사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 감사관은 2010년 11월 20일까지 해당 명단에 남아있는 지원자 중, 민주당 지지자 3명, 공화당 지지자 3명, 양당을 모두 지지하지 않는 사람 2명의 이름을 임의로 선발해야 합니다. 이 8명의 지원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최초 8명의 위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발된 최초 8명의 위원은 주 감사관이 최초 8명의 위원을 선발할 때 사용한 3개의 부류 명단으로부터 각각 2명의 위원을 선발함으로써 최종 6명의 위원을 선발할 것입니다. 최종 6명의 위원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임명되어야 합니다.

## 7. 새로운 선거구는 어떻게 승인됩니까?

위원회는 각각의 선거구에 공평한 수의 인구가 합리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40개의 상원 선거구, 80개의 하원 선거구, 4개의 조세형평국 선거구를 지정해야 합니다. 일단 위원회가 선거구의 지리상 경계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 해당 선거구는 개정된 상원 선거구가 표시된 지도 1개, 개정된 하원 선거구가 표시된 지도 1개, 개정된 조세형평국 선거구가 표시된 지도 1개로 구성된 총 3개의 지도에 표시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그 후 해당 3개의 지도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각각의 지도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최소 민주당 지지자 3명, 공화당 지지자가 3명, 양당 모두 지지하지 않는 사람 3명의 찬성 표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위원회가 3개의 최종 선거구 지도를 승인하고 나면 선거구 지도는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와 함께 국무장관에게 전달됩니다.

(계속)

**8. 위원회 위원은 급여를 받게 됩니까?**

법안은 위원회 위원에게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날짜를 기준으로 매일 \$3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해당 법안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개인적인 경비 또한 보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9.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얼마입니까?**

법안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원회의 임기는 2010년 11월 20일 전까지 임의 선발된 최초 위원이 위원으로 선발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며 그 다음 위원회의 최초 의원이 위원으로 임의 선발되는 시점인 2020년 11월 20일 이전에 종료됩니다. 그러나 위원회 업무의 대부분은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승인하는 시점인 2011년 9월 15일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10.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위원회 활동을 병행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의 주된 선거구 조정 업무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어 2011년 9월 15일 이전에 종료될 것입니다. 9개월 반에 달하는 해당 기간 동안 위원회 위원은 상원, 하원, 조세형평급의 선거구 경계를 각각 정의하는 3개의 최종 선거구 지도를 채택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현재 정확한 인원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위원회 위원에게는 업무수행을 보조할 직원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 전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여러 선거구의 지리상 경계를 결정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검토 및 토의하며 최종 지도의 승인에 대해 표결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일부 직무와 같이 오직 위원회의 위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가 존재합니다.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은 해당 업무의 속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원자는 위원회가 최종 지도 승인을 위해 함께 일하는 9개월 반의 기간 동안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위원회 업무에 할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 법안은 위원회의 업무를 장려할 수 있도록 어떤 고용주도 직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해고할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보복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이 승인된 직후 위원회의 직무는 새롭게 지정된 선거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조정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념 활동 등을 수행하는 데 집중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위원회에게는 통상적인 업무 일정을 소화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책임만이 부여됩니다.

###

